

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 
(황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48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16.

발 의 자 : 황 희 · 민홍철 · 추미애  
부승찬 · 손명수 · 이용선  
한민수 · 이소영 · 김종민  
문진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군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라는 중대한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잦은 부대 이동, 격오지·도서 지역 근무 등 특수한 복무환경에 놓여 있음. 이러한 환경적 제약으로 군인자녀는 학습 연속성 저해, 교육격차 심화 등 교육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, 이는 나아가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군인의 사기 저하로 연결될 우려가 있음.

그러나 현행 국방 관련 법령은 군인자녀의 교육 지원을 포괄적·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기반이 미흡하여, 국가가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장하여야 할 교육 지원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군인자녀가 겪고 있는 교육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국가 안보에 헌신하는 군인의 자녀가 학비 지원, 맞춤형 교육 지원 등 필요한 교육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

마련함으로써 군인자녀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군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국가 안보에 헌신하는 군인자녀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이 나 군 복무 특성으로 인한 환경적 제약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1조 및 제3조).
- 나.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다. 입학금·수업료 등 학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).
- 라. 군 복무 환경으로 인한 교육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 지원, 청소년 캠프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, 심리·진로 상담 등 맞춤형 교육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).
- 마.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군인자녀를 위한 기숙사 운영, 통학 차량 지원 등 교육 편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8조).
- 바.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군인자녀에게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군인자녀 국립학교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9조).

## 군인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에 헌신하는 군인의 자녀가 안정적이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도록 지원함으로써 군 복무 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군인 자녀의 교육상 불이익을 해소하며, 이를 통하여 군인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군인”이란 현역으로서 「군인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교·준사관·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.
2. “군인자녀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
  - 가. 군인 및 배우자의 자녀
  - 나. 「군인사법」 제54조의2에 따른 전사자·순직자의 유족인 자녀
  - 다. 「군인사법」 제54조의2에 따른 전상자·공상자로서 전역한 사람 및 배우자의 자녀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

자녀가 안정적이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(교육지원의 기본원칙) 교육지원은 군인의 근무 환경, 자녀의 교육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.

제5조(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) ① 제3조에 따른 국가의 정책 수립·시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자녀 교육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, 위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관계 공무원, 교육 및 복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학비 지원) 국방부장관은 군인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금·수업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또는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
  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
  3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었거나 재학 중인 학생
- ② 제1항에 따른 학비 지원의 기준·내용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맞춤형 교육지원)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자녀의 학습 격차 해소와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온라인 학습 지원: 격오지 및 전학 등으로 인한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, 원격 학습 시스템 및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
2. 청소년 캠프 및 특화 프로그램: 창의적 체험 활동, 진로 탐색, 리더십 함양 등 군인자녀의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캠프 및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
3. 심리·진로 상담: 군 복무 환경 변화에 따른 심리적 안정 지원 및 전문적인 진로·학업 상담 지원

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위탁받은

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의 내용·방법 및 제2항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교육 편의 지원) 국방부장관은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자녀를 위하여 군인자녀 기숙사 운영 및 통학 차량 지원 등 교육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 편의 지원의 내용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9조(군인자녀 국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) ① 국방부장관은 자녀 교육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의 군인자녀에게 안정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2조제2항에 따라 군인자녀 국립학교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군인자녀 국립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별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라 별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위원회의 위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을 포함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.